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01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희용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13.
3. 회부연월일 :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고, 지역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은 생산기반 파괴 등 막대한 재산 피해로 생업의 터전이 파괴되고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지진, 산불,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 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안 제29조의2제1항 신설),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같은 조 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재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현행	개정안
	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사망 27명 등 183명의 인명피해와 산림, 주택, 농어업시설 등 1조 81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²⁾, 해당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도 큰 피해를 입었음.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원(국비 1조 2,136억원, 지방비 6,673억원)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음³⁾.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해당 복구계획에 반영된 중소기업 및 소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5.5.)

3) <시설별 복구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사유시설	495,393	346,792	148,601
공공시설	1,385,467	866,816	518,652
합계	1,880,860	1,213,608	667,253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공인에 대한 지원액은 약 198억원 수준으로, 그 내용은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67.5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철거비 97.8억원, 공장 폐기물 처리비 33억원 등이고, 해당 복구계획 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34억원 및 지역상권활력지원 20억원 등 산불 관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피해 업체를 지원중이며,

재난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 복구 및 경영안정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법률 제20961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5년 11월 시행 예정)⁴⁾의 시행에 맞추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음.

4) 법률 제2096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개정안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⁵⁾, 개정안의 지원내용은 ①시설복구비, ②경영안정자금, ③세제지원 등임.

[표 1] 개정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비교

구분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대상 중소기업 정의	- 조문에 별도 정의 부재 ※ 현행법 제2조(정의)는 “지역 중소기업”을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시설복구비 지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 - 세제 지원	- 시설의 복구 지원 -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지원 대상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재난”

자료: 개정안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

5) 현행법은 제2조에서 “지역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안 심사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25년 5월 개정되어 개정안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⁶⁾이 개정⁷⁾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6) 법률 제2096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7) 법률 제2096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5.5.27. 공포, 2025.11.28. 시행 예정). 다만,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 등의 개정규정은 2025.3.21.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안의 지원내용 중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①시설복구비, ②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이 반영되어 있음.

[표 2] 2025년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기존	개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생략) 1. ~ 5. (생략)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u>소상공인에 대한 지원</u> <u><신 설></u>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 <u>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u>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u>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둘째, 개정안 제29조의2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 특례와 지방세 특례는 각각 「조세특례제

한법」 8)과 「지방세특례제한법」 9)에 따라 실질적인 감면·면제가 이루어지는바, 개별 법률에서 조세특례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직접 조세 감면·면제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⁰⁾. 또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등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 25. (생략)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실제 여러 법률에서 조세 감면·면제의 근거 규정이 규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세 감면·면제를 위해서는 개별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야 함.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조세의 감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6조(조세 감면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2조(조세의 감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세제혜택) 등 다수의 법률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이자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는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2025. 5. 27. 공포)되어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시설복구비 및 경영안정을 지원할 예정임에 따라 중복 입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법률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참고로, 재난피해 중소기업의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¹²⁾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으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고,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등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¹³⁾ 및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¹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점,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

1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4호,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13) 의안번호 2210421호(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52호(정희용의원 대표발의)

14) 의안번호 2210419호(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53호(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건의 법률 제정안¹⁵⁾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7

15)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615호,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855호,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57호,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98호,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670호, 이달희의원 대표발의)